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33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이재관 · 이병진 · 임호선

김 윤 · 박홍배 · 박해철

강준현 · 허성무 · 정진욱

김태년 · 전용기 · 허종식

최혁진 · 이수진 · 김원이

김교홍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스플레이기술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경제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기술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법을 통한 디스플레이기술에 대한 지원이 국내 산업 전반의 동반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기술 사업 시 국내에서 제조 및 생산되는 소재·부품·장비의 활용 비율이 높아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거나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이월공제받을 수 있도록 이월공제제도를 운영중이나 산업의 특성상 장기

간의 투자가 필요한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이월공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국산 소재·부품·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제25조의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위원이 대표발의한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제155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22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9(디스플레이기술 관련 국산 소재·부품·장비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제조·생산된 소재·부품·장비(이하 이 조에서 “국산장비”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구매 비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산장비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9”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9”로, “10년”을 “10년(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제10조 및 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2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9”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스플레이기술 관련 국산 소재·부품·장비 사용에 대한 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국산장비 구매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5조의9(디스플레이기술 관련 국산 소재·부품·장비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제조·생산된 소재·부품·장비(이하 이 조에서 “국산장비”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구매 비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u> <u>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산장비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u>

	<u>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① (생략)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의2, 제 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 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 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 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6, <u>제25조의8</u> ,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3, 제2 8조의5, 제29조의2부터 제29조 의4까지, 제29조의8제4항·제5 항,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 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 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 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 8조까지, 제99조의9,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 ----- ----- ----- ----- ----- ----- ----- <u>제25조의8</u> , <u>제25조의9</u> ----- ----- ----- ----- ----- ----- -----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생략)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

④

제25조의8, 제25조

의9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⑤ ~ ⑪ (생략)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3항,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 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 제1항 및 제126조의7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① -----

-----제25조의8, 제25조의9-----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
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② ~ ④ (생략)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생략)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

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3. -----

제25조의8, 제25조의9

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3, 제122조의4 제1항,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 공제금액 4. (생 략) ③ · ④ (생 략)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 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 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 ----- ----- -----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 ----- ----- ----- -----제25조의9- ----- ----- ----- ----- ----- ----- ----- ----- ----- ----- ----- ----- -----
--	--

-----10년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제10
조 및 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
의 경우에는 20년)-----

② -----

----- 제 25 조 의 9 -----

